【별지 제1호 서식】

부양가족신고서

부양의무 공무원	성 명			생년월일	
	직 급			소 속	
부양가족상황	성 명	관계	생년월일	직장명/기관성격	신고사유 (혼인, 출생, 사망 등)
				(예)국립광주과학관/공공기관	
				(예)○○화학/민간회사	

특기사항 :

① 부양가족 중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(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)을 명시

② 배우자가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·별정우체국 직원·공공기관 직원·지방공사 직원·지방공단·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, 해당 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명시

※ 배우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·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·별정우체국·공공기관·지방공사·지방공단·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

※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

※ 부양가족의 **직장명** 및 **기관성격**을 구체적으로 기재(다만, 자영업은 '자영업'으로 표기 가능)

③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 제9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하거나,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을 교부받거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·활용 할 수 있음

본인은 허위의 방법(중복지급 포함)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.

첨부 : 1. 주민등록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 1부

2. 장애진단서 등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
년 월 일

신 고 인 성명 (인)

대리신고인 성명 (인) 관계 (의)

위의 사실을 확인함

년 월 일

소속기관장 (인)